

# 2008년 新기업소득세법의 중요한 변화

## 목 차

|                      |    |
|----------------------|----|
| I. 일반규정 .....        | 3  |
| II. 손금항목.....        | 7  |
| III. 고정자산의 세무처리..... | 12 |
| IV. 조세우대정책 .....     | 16 |
| V. 특별납세조정 .....      | 21 |

**Fmac** 화인경영회계법인 **CPC** 천평회계법인

[www.icpc.co.kr](http://www.icpc.co.kr)

2008년부터 내외자기업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新기업소득세법이 시행된다. 과거 외상투자기업이 누려오던 대부분의 조세우대정책은 폐지되고 이미 적용받고 있던 기업과 신법 반포 전에 설립된 기업은 과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은 그 동안 외상투자기업이 적용하던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이하 ‘舊세법’)과 2008년부터 새로이 적용하는 기업소득세법(이하 ‘新세법’)의 중요한 변화를 비교형식으로 대비시키고 차이와 대응방안을 설명하였다.

## 1. 일반규정

### 1. 근거법률

| 舊세법   | 新세법   |
|---|---|
| 1991년4월9<외상투자기업과외국기업소득세법><br>1991년6월30<외상투자기업과외국기업소득세법<br>실시세칙> | 2007년3월16일 <기업소득세법><br>2007년12월6일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br>2007년12월26일<기업소득세 과도우대정책 실<br>시에 대한 통지> |
| 1991.7.1 시행, 신세법실시와 동시에 폐지됨                                     | 2008.1.1부터 시행   |

<기업소득세법>,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 및 <기업소득세 과도우대정책 실시에 대한 통지>가 발 표됨에 따라 신세법 적용에 대한 기본적인 체계가 완성됨.

### 2. 납세의무자

| 舊세법  | 新세법  |
|--|--|
|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을 납세의무자로 하며<br>내자기업은 <기업소득세법>을 적용함                   | 중국내의 기업과 기타 소득을 획득하는 조직은<br>기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법 제1조) |
| 외상투자기업은 거주자기업으로 중국내외의 모<br>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무제한<br>납세의무자임.   | 내자기업과 외상투자기업은 거주자기업으로 무<br>제한납세의무를 부담한다.(법 제3조)      |
| 외국기업은 비거주자기업으로 중국내에서 발생<br>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제<br>한적 납세의무자임 | 외국기업은 비거주자기업으로 제한적 납세의무<br>를 부담한다.(법 제3조)            |

신 세법에서 기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내자기업,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을 모두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통합 기업소득세법이 됨.

### 3. 과세대상

| 舊세법   | 新세법  |
|---|--|
| 생산경영소득: 제조업, 채굴업, 교통운수업, 건축설치업,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수리업, 상업, 금융업, 서비스업, 탐사개발작업, 기타의 생산경영 소득(배당, 이자, 임대료, 재산양도수익, 특허권, 전용기술, 상표권, 저작권의 제공 또는 양도소득, 영업외수익 등의 소득) | 재화판매소득, 용역제공소득, 재산양도소득, 배당등 지분투자소득, 이자소득, 임대료소득, 특허권 사용료 소득, 증여소득과 기타소득 (조례 제6조) |

- 구 세법은 소득을 업종별로 열거하고 있으나 신 세법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9개의 소득으로 구분하여 열거함.
- 그러나 과세대상 소득에 대한 실질개념은 차이가 없음.

### 4. 세율

| 舊세법  | 新세법   |
|--|---|
| 외상투자기업과 중국경내 기구나 장소를 설립한 외국기업의 소득은 <u>기업소득세 30%, 지방소득세 3%</u> 를 적용함. | 거주자기업의 기업소득세율은 <u>25%</u> . (법 제4조)                                 |
| 경제특구 등에 소재하는 기업은 15%(24%)  | 소형기업에 대한 우대세율 <u>20%</u> . (법 제28조)                                 |
| 중국내에 기구나 장소를 설립하지 않은 외국기업이 중국경내에서 취득하는 소득은 소득의 지급자가 20%의 세율로 원천징수    | 하이테크기술기업에 대한 우대세율 <u>15%</u> . (법 제28조)                             |
|  | 비거주자 기업이 취득한 소득은 <u>20%</u> 의 세율로 원천징수. (법 제4조)                     |
|  | 중국내에 기구나 장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비거주자기업이 취득하는 소득은 <u>10%</u> 의 세율 적용. (법 제27조) |

- 구 세법에서 규정하던 지방소득세는 폐지됨.
- 기왕 30%, 24%, 20%, 15%의 세율에서 25%, 20%, 15%, 10%로 4종의 세율이 병존하게 됨.
- 비거주자기업의 원천징수세율은 변화가 없음.
- 신 세법에서는 하이테크기업(高新技术企业)의 경우 특정지역(개발구 등)에 소재하지 않더라도 우대세율 적용 받을 수 있음.
- 경제특구 등에 소재하는 기업의 저세율에 대한 과도기 적용방법은 우대정책에서 상세히 다룸.

## 5. 비과세 소득

| 舊세법  | 新세법   |
|------|---|
| 규정없음 | <p><b>1. 재정보조금</b><br/>           각급 인민정부가 납세예산관리 사업단위, 사회단체 등 조직에 지출한 재정자금을 의미하며, 국무원재정, 세무주관부문이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p> <p><b>2. 행정사업성수수료, 정부성기금</b><br/>           행정사업성수수료는 기업이 법률 법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원규정단계에 의거해 비준을 받은 것으로 사회공공관리, 국민, 법인 혹은 기타조직에 대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 중 특정대상에게 수취, 납입한 재정관리비용</p> <p><b>3. 국무원이 정하는 기타 비과세수익</b><br/>           기업이 취득한 것으로 국무원 재정, 세무주관 부문이 전문적 용도로 규정하고 국무원비준을 통과한 재정성 자금(법 제7조, 조례 제26조))</p> |

비과세 소득은 과거 내자 기업소득세법의 규정을 신 세법에서 새로 규정함.

## 6. 신고납부기한

| 舊세법   | 新세법   |
|---|---|
| <p>매월 또는 분기별로 월 또는 분기 종료후 15 일내에 중간예납.</p> <p>사업연도종료후 4 월내에 신고하고 5 월까지 정산납부함.</p> | <p>매월 또는 분기별로 월 또는 분기 종료후 15 일내에 중간예납한다.</p> <p>사업연도종료후 5 월내에 신고하고 정산납부한다.<br/>(법 제 54 조)</p> |

기업소득세의 중간예납기한은 변동이 없으며 확정신고기한을 4월에서 5월로 연장함.

## 7.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舊세법  | 新세법  |
|--|--|
| <p>외상투자기업이 청산시 기업의 미처분이익, 각종 기금 및 청산비용을 공제한 후의 기업의 순자산이나 잔여재산가액이 <u>기업의 납입자본(实缴资本)</u>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청산</p> | <p>기업이 과세연도 중에 경영활동을 중지하는 경우 중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기의 기업소득세를 일괄 정산하여야 한다. (법 제55조)</p> <p>기업이 법인 취소등기를 하기 전에 그 청산소</p> |

|               |   |
|---------------|---|
| <p>소득이 됨.</p> | <p>득을 세무기관에 신고하고 법률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법 제55조)</p> <p>청산소득은 기업 전체 자산의 현금변환가치 또는 거래가격에서 <u>순자산가치(资产净值)</u>, <u>청산비용</u>, <u>관련세금을 차감한 후</u> 잔액을 의미한다.<br/>(조례 제 11 조)</p> |
|---------------|---|

청산소득의 개념을 합리적으로 변경하였으며 청산소득의 납부기한을 명시함.

## II. 손금항목

### 1.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는(손금불산입) 항목

| 舊세법   | 新세법  |
|---|--|
| ① 고정자산의 취득 및 건설관련 지출<br>② 무형자산의 양수 및 개발관련 지출<br>③ 자본의 이자<br>④ 각종 소득세 세액<br>⑤ 불법경영에 대한 벌금과 재산의 몰수손실<br>⑥ 각종 조세의 가산금과 벌금<br>⑦ 자연재해 및 의외 사고로 인한 손실의 배상<br>⑧ 중국경내 공익구호 성격 이외의 기부금<br>⑨ <u>본사에 지불하는 특허권사용료</u><br>⑩ 생산 및 경영업무와 관계없는 지출 | ① 투자자에게 지급한 배당<br>② 기업소득세<br>③ 세금채납금<br>④ 벌금과 과태료 및 몰수된 재산손실<br>⑤ 공익성 기부금 이외의 기부금 지출<br>⑥ 찬조지출<br>⑦ <u>심사 받지 아니한 준비금지출</u><br>⑧ 취득한 수익과 무관한 기타지출<br>(법 제 10 조) |

- 각종 평가성 총당금 즉, 재고자산평가손실총당금, 유가증권평가손실총당금 등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본사에 지불하는 특허권사용료를 손금불산입 항목에서 삭제함.
- 구 세법에서는 관련기업에 지불한 관리비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세칙 제58조) 신세법에는 동 규정이 삭제되어 합리적인 수준의 본사관리비를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음.

### 2. 공익성기부금

| 舊세법   | 新세법   |
|---|---|
| 국가가 지정한 중국내 비영리사회단체 또는 국가기관을 통하여 교육, 민정 등 공익사업과 수재지역·빈곤지역에 기증하는 경우 <u>전액</u> 당기비용으로 처리 가능 | 기업이 공익성 사회단체나 현금이상의 인민정부를 통해 <공익사업기부법>에 규정한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기부금지출은 당해 회계상 <u>이윤총액의 12%</u> 을 한도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법 제 9 조, 조례 제 51 조) |

공익성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이윤총액의 12%로 규정하고 이윤총액은 납세조정 전의 회계상 당기순이익을 말함.

### 3. 급여

| 舊세법   | 新세법  |
|---|--|
|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와 복리후생비는 급여기준과 증빙서류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u>관할세무당국이 심사·동의</u> 후 비용으로 처리함. | 과세연도중 기업이 고용직원에게 대해 지불한 현금 또는 비현금 급여, 인센티브, 출장비 등 지원금, 보조금, 연말보너스, 연장근무비용 등 합리적인 급여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br>(조례 제 34 조) |
| 중국경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국외 사회보험   | 국무원 관련부문이나 성급인민정부가 규정한   |

|                       |  |
|-----------------------|--|
| <p>료는 비용으로 계상 불가능</p> | <p>범위와 기준에 의거해 고용직원에 대해 납부한 <u>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생육보험 등 기본보험료와 주택공적금도 전액공제 가능하다.</u><br/>(조례 제 35 조).</p> <p>기업이 투자자와 직원에 대해 지불한 양로보험료와 의료보험료 보충비용과 특수업무 종사 직원에 대한 신변안전보험과 규정에 부합하는 상업보험에 대해서는 재정, 세무관련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나 기업이 투자자와 직원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불하는 상업보험은 공제가 불가능하다.<br/>(조례 제36조)</p> |
|-----------------------|--|

#### 4. 복리후생비, 노동조합 경비, 직원교육비 및 노동보호비

| 구분      | 舊세법                     | 新세법  |
|---------|-------------------------|--|
| 직공복리비   | 급여총액의 14% 한도내에서 손금산입가능. | 직원 복지비용 지출은 <u>급여총액의 14%</u> 를 한도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조례 제40조)   |
| 노동조합 경비 | 한도없음.                   | 노동조합 경비지출은 <u>급여총액의 2%</u> 를 한도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조례 제41조)   |
| 직원교육비   | 한도없음.                   | 직원교육경비 지출은 <u>급여총액의 2.5%</u> 를 한도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초과하는 부분은 다음 과세연도로 <u>이월하여 손금산입</u> 할 수 있다. (조례 제42조) |
| 노동보호비   | 한도없음.                   | 합리적인 노동보호 지출은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다. (조례 제48조)   |

- 사용인에 대한 급여외 부대비용 중 직공복리비의 손금한도는 14%로 변화가 없으며, 노동조합 경비와 직원교육비의 손금한도를 새로 정함.
- 노동보호비는 한도없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므로 직공복리비와 노동보호비를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 ‘노동보호비’란 사용인에게 제공된 작업복, 장갑, 안전보호용품 및 방한피서 용품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용인에게 지출되는 성격을 지님.
- 세법에서는 직공복리비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기업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인을 위해 지불한 의약비, 의료보험금, 의료기구에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 직원생활관란보조금, 생활복지부문(이발소, 목욕탕, 탁아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5. 이자비용

| 舊세법  | 新세법   |
|--|---|
| 기업의 생산·경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u>합리적인 차입금이자(일반 상업대출이자율보다 높지 않은 이자율로 계산된 이자)</u> 는 기업이 제출한 차입금이자지급증명문서를 해당세무기관이 심사 동의한 후 손금으로 계상함. | 기업의 생산 경영과정 중 발생한 아래와 같은 이자지출은 손금산입 허용한다.<br><br>(1) 비금융기업이 금융기업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이자지출의 경우 금융기업의 각 예금이자지출과 동종업종으로부터 대출한 금액의 이자지출, 기업이 비준을 거쳐 발행한 채권의 이자지출<br><br>(2) 비금융기업이 비금융기업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이자지출의 경우 <u>금융기업의 동일기간과 동일종류의 대출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u><br><br>(조례 제38조) |

한국본사 등 비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동일한 종류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을 한도로 비용을 인정한다. 또한 이는 이전가격세제와도 연관되는 문제임.

## 6. 금융비용의 자본화

| 舊세법   | 新세법   |
|---|---|
| 기업이 고정자산의 취득이나 건조 또는 무형자산의 취득 및 개발에 사용한 차입금의 경우 당해 자산이 사용되기 전에 지불된 이자는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 | 기업이 고정자산과 무형자산을 구매 혹은 건설하거나 <u>12개월 이상의 제조기간 경과 후 비로소 예정된 판매가능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재고자산을 위하여</u> 발생한 차입금에 대하여 관련 자산의 구매 또는 건설기간 중 발생한 합리적인 금융비용은 관련자산 원가로 계상한다.<br><br>(조례 제37조) |

제조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재고자산에 대해서도 금융비용을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해야 함.

## 7. 접대비(业务招待费)

| 舊세법   | 新세법  |
|---|--|
| 업무관련 접대비는 확실한 기록 또는 증빙으로 입증되는 경우 아래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함.<br><br>- 매출액 기준 한도액(제조업)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접대비는 <u>발생액의 60%까지</u> 손금산입 가능하나 최대 당해 연도 <u>매출액의 0.5%</u> 를 초과하지 못한다.<br><br>(조례 제43조) |

|   |  |
|---|--|
| <u>연간 순매출액 1,500만원 이하: 매출액의 0.5%</u><br><u>연간 순매출액 1,500만원 초과 부분: 매출액의 0.3%</u><br><br>- 업무수입 기준 한도액(서비스업)<br><u>연간 수입총액 500만원 이하: 수입총액의 1%</u><br><u>연간 수입총액 500만원 초과 부분 : 수입액의 0.5%</u> |  |
|---|--|

- 신세법에서는 접대비 손금한도액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구분을 폐지하고 한도액에 접대비 발생액의 60%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접대비 중 40%는 무조건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 업무와 무관한 접대비는 찬조지출에 해당되며 전액 비용으로 인정 안됨.
- 업무관련 접대비에 대한 중국정부의 규제가 증대됨에 따라 접대비 지출에 대한 통제와 접대비 외에 적절히 다른 항목으로 처리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 8. 광고비와 업무선전비(广告费和业务宣传费)

| 舊세법             | 新세법   |
|-----------------|---|
| 광고비지출에 대한 한도 없음 | 광고비와 업무선전비용은 <u>매출액의 15%</u> 를 한도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초과하는 부분은 <u>다음기로 이월하여</u> 손금산입 가능하다.<br>(조례 제44조) |

- 신세법에서는 광고비와 업무선전비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액을 매출액의 15%로 규정함.
- ‘광고비’는 다음의 3조건에 부합하는 지출을 의미함.
  - ①공상부문의 비준을 거친 전문기구를 통해서 제작된 광고물일 것
  - ②비용을 지출하고 관련 영수증을 수령하였을 것
  - ③일정한 매체를 통해서 방송되어야 할 것
- ‘업무선전비’란 일정한 매체를 통하지 않는 광고지출로 광고선전물품과 광고자료 등을 말함.

### 9. 대손충당금

| 舊세법  | 新세법  |
|--|--|
| <u>신용공여 또는 리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u> 의 경우 미수금 잔액에 대하여 <u>3%</u> 이하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일반기업의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에 대한 규정이 없어 내자기업 소득세를 준용하여 <u>0.5%</u> 를 인정함. | 본 세칙과 국무원 재정, 세무주관부문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각종 자산감액준비, 위험준비 등의 <u>준비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u><br>(조례 제55조) |

- 신 세법에서는 대손충당금에 대한 손금산입 기준을 아직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과거 내자기업소득세법은 외상매출금 잔액의 0.5%를 대손충당금으로 인정하였으며, 한국의 경우 1%를 대손충당금으로 인정함.

### 10. 대손금

| 舊세법                     | 新세법                         |
|-------------------------|-----------------------------|
| 대손금은 세무기관의 심사승인을 받아야 하며 | <u>대손금 요건을 분명히 규정하지 않음.</u> |

손금산입 가능한 대손금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채무자 파산으로 인해 그 파산재산의 청산상환 후에도 회수불가능한 경우
- 채무자 사망으로 인해 유산으로 상환한 후에도 회수불가능한 경우
- 채무자가 변제기한 경과후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2년 넘게 회수불가능한 경우

- 신세법은 대손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과거 내자기업소득세법은 소멸시효 완성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였고 한국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III. 고정자산의 세무처리

#### 1. 고정자산의 정의

| 舊세법   | 新세법  |
|---|--|
| <p>①내용연수 <u>1년 이상인</u> 건물, 건축물, 기계, 운송수단 기타 생산 및 경영과 관련된 주요설비, 기구, 공구 등</p> <p>②주요생산 및 경영설비에 속하지 않는 물품으로 단위당 가격이 <u>2,000원 이하</u>이거나 <u>내용연수 2년 이하인</u> 것은 실제사용금액을 당기 비용으로 계상가능</p> | <p>고정자산이란 제품생산, 용역제공, 대여 혹은 경영관리를 위해 보유하는 것으로서 <u>사용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u> 비화폐성자산을 의미하며, 주택, 건축물, 기기, 기계, 운송공구 및 기타 생산경영과정에 필요한 설비, 기구, 공구 등을 포함한다.(조례 제57조)</p> |

- 감가상각 대상인 고정자산을 내용연수가 1년을 초과하는 비화폐성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비생산용 비품(휴대폰, 인쇄기등)일지라도 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자산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해야 함.

#### 2. 감가상각방법

| 舊세법   | 新세법  |
|---|--|
| <p>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계산</p> <p>정액법 외에 다른 감가상각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업의 신청을 관할세무기관의 심사후 상급기관을 거쳐 국가세무국의 비준을 받아야 함</p> <p>아래와 같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단축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기업의 신청, 관할세무기관의 심사, 상급기관을 경유하여 국가세무총국의 승인을 거쳐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알칼리에 의해 강하게 부식된 기계장치, 연중 계속적으로 진동을 받는 공장건물·건축물</li> <li>- 사용을 제고 및 사용강도 강화를 위해 주야로 가동되는 기계설비</li> <li>- 중외합작기업의 합작기간이 규정된 내용연수보다 짧고, 합작기간 만료후 중국측 합작자에게 귀속되는 중외합작기업의 고정자산</li> </ul> | <p>고정자산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계산한다.(조례 제59조)</p> <p>다음의 자산은 내용연수 단축하거나 가속상각법을 사용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기술진보, 상품의 세대교체가 비교적 빠른 고정자산</u></li> <li>- <u>장기간 강한 진동에 처해있고 고부식 상태에 있는 고정자산</u></li> </ul> <p>내용연수를 단축하는 방법을 채택한 것은 최저 내용연수는 기본 감가상각기간의 <u>60%보다</u> 짧을 수 없다.</p> <p>가속상각법을 채택한 경우 <u>이중채감법</u> 혹은 <u>연수합계법</u>을 사용한다.(조례 제 98 조)</p> |

- 내용연수를 단축하거나 가속상각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선택할 수 있는 가속상각방법은 이중채감법과 연수합계법이며, 한국에서 대부분의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정률법은 가속상각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3. 감가상각의 개시와 중단

| 舊세법  | 新세법 |
|--|-----|
| 기업의 고정자산은 최초로 사용에 투입한 달의 다음달부터 상각액을 계산하며, 사용이 정지된 고정자산은 사용이 정지된 달의 다음달부터 감가상각 계산을 중단 | 좌동  |

감가상각의 개시와 중단은 한국과 반대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즉, 한국은 초월산입 말월불산입의 규정을 따름.

### 4. 잔존가액

| 舊세법  | 新세법   |
|--|---|
| 자산의 잔존가치는 원가의 10%에 미달할 수 없으며, 잔존가치를 적게 유보하거나 잔존가치를 유보하지 않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세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기업은 고정자산의 성질과 상황에 따라 고정자산의 예상 순잔존가치를 결정하고, 한번 결정된 예상 순잔존가치는 변경할 수 없다. (조례 제59조) |

- 신세법에서는 감가상각의 잔존가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구세법은 10%로 규정하였으며, 과거 내자기업소득세법은 5%로 규정하였다. 한편, 한국의 경우 잔존가치를 0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함.

### 5. 내용연수

| 舊세법  | 新세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 건축물: 20년</li> <li>- 기차, 선박, 기기, 기계, 기타생산설비: 10년</li> <li>- 전자장비, 기차와 선박이외의 운송장비, 생산경영업무와 관련된 기구, 공구, 가구등: 5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 건축물: 20년</li> <li>- 비행기, 기차, 선박, 기계와 기타생산설비: 10년</li> <li>- 생산활동과 관련되는 기구, 도구, 가구: 5년</li> <li>- 비행기, 기차, 선박 이외의 운송공구: 4년</li> <li>- 전자설비: 3년</li> </ul> (조례 제60조) |

차량등 운송장비와 컴퓨터 등 전자설비는 내용연수가 각각 1년과 2년씩 단축됨.

### 6. 생물자산의 내용연수

| 舊세법  | 新세법   |
|------|---|
| 규정없음 | 생산성 생물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업류 생산성자산: 10년</li> <li>- 축산류 생산성자산: 3년</li> </ul> (조례 제64조) |

생물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새로이 규정함.

## 7. 무형자산 상각

| 舊세법  | 新세법               |
|--|-------------------|
| 무형자산은 <u>정액법</u> 으로 상각                                     | 좌동                |
| 관련 법류규정 혹은 계약서에 약정된 사용기간이 있는 경우 규정 혹은 <u>약정 사용기간</u> 동안 상각 | 좌동                |
| 약정없는 경우 상각기간은 <u>10년 이상</u>                                | 좌동<br>(조례 제 67 조) |

## 8. 수선비

|        | 舊세법  | 新세법  |
|--------|--|--|
| 수선비    | 고정자산 사용증 확장,교체,개축,기술개선 등 고정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은 그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를 증가시켜야 하며 내용연수를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내용연수를 적절히 연장하고 감가상각비의 계산도 그에 따라 조정함. | <p>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의 개량지출은 <u>장기선급비용</u>으로 계상하여 <u>고정자산의 예상 사용가능기간</u> 동안 상각한다.</p> <p>임차한 자산의 개량지출은 <u>장기선급비용</u>으로 계상하여 계약서에서 약정한 잔여 <u>임대기간</u> 동안 상각한다.</p> <p>상기외에 개량한 고정자산의 사용기간이 연장된 경우 해당자산의 감가상각 기간을 적절히 연장해서 감가상각한다.<br/>(조례 제68조)</p> |
| 대수선 지출 | 규정없음   | <p>아래 조건에 동시에 부합하는 대수선 지출은 <u>장기선급비용</u>으로 계상하여 <u>고정자산의 사용가능기간</u> 동안 상각한다..</p> <p>(1) 수리지출이 고정자산취득 당시 취득원가의 50%이상인 경우<br/>(2) 수리 후 고정자산의 사용기간이 2년 이상 연장된 경우<br/>(조례 제69조)</p>   |

요건에 부합하는 대수선 지출은 원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장기선급비용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함.

## 9. 장기선급비용

| 舊세법  | 新세법  |
|--|--|
| 설립기간중에 발생한 비용은 생산경영이 개시된 달의 다음달부터 상각하며 상각기간 <u>5년</u> 이상 | 기타 장기선급비용으로 계상해야할 지출은 지출발생 익월부터 상각하며 그 기간이 <u>3년</u> 미만 이어서는 안된다.<br>(조례 제70조) |

개업비와 같은 장기선급비용의 상각기간이 2년 축소됨.

#### IV. 조세우대정책

##### 1. 저세율 및 기간감면의 우대정책과 신세법의 과도적 적용방법

구세법이 외상투자기업에 부여하여왔던 조세우대정책은 크게 세율감면과 기간감면이 있으며, 특정 지역과 생산성여부에 따라 우대정책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 경제특구  | 경제기술개발구 | 상해포동신구 | 연해개방구 |
|------|------|-------|---------|--------|-------|
| 생산성  | 세율감면 | 15%   | 15%     | 15%    | 24%   |
|      | 기간감면 | 2면3감반 |         |        |       |
| 비생산성 | 세율감면 | 15%   | 30%     | 30%    | 30%   |
|      | 기간감면 | 1면2감반 | 없음      |        |       |

한편, 중요산업과 특정항목에 적용되는 조세우대정책은 다음과 같다.

| 항목명            | 세율감면       |     |    | 기간감면   |                                   |
|----------------|------------|-----|----|--|-----------------------------------|
| 에너지, 교통 등 기초설비 | 15         |     |    | 5년5감반, 다음에 한함<br>항구부두건설, 해남도에서 기초설비와 농업에 종사, 포동신구에서 기초설비에 종사 |                                   |
| 수출산업           | 지역세율       | 15  | 24 | 30   | 2년3감반                             |
|                | 정상감면       | 7.5 | 12 | 15   |                                   |
|                | 지역세율       | 15  | 24 | 30   | 정기감면완료 후 당기 수출액비율이 70%이상일때 계속 감반함 |
|                | 연장감면       | 10  | 12 | 15   |                                   |
| 선진기술           | 지역세율       | 15  | 24 | 30   | 2면3감                              |
|                | 정상감면       | 7.5 | 12 | 15   |                                   |
|                | 지역세율       | 15  | 24 | 30   | 정기감면완료 후 여전히 선진기술일경우 3년간 감반함.     |
|                | 연장감면       | 10  | 12 | 15   |                                   |
| 농림목축업          | 15, 24, 30 |     |    | 2년3감반<br>정기감면완료후 10년간 계속 15%~30%로 감면함                        |                                   |

상기의 우대정책은 신세법의 시행으로 모두 폐지되고 2007년3월16일 이전 설립등기된 기업에 대해서는 2008년1월1일부터 다음과 같이 과도적 세율과 정기감면정책을 시행한다.

과거 저세율의 우대정책을 향유하던 기업은 신 세법실시 후 5년내에 점차 과도적으로 법정세율에 도달한다. 그 중 15%의 세율을 향유하던 기업은 2008년에 18%, 2009년에 20%, 2010년에 22%, 2011년에 24%, 2012년에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과거 24%의 세율을 적용하던 기업은 2008년부터 25%를 적용한다.

과거 2면3감 또는 5면5감 등 기간감면의 우대정책을 향유하던 기업은 신 세법실시 후 계속 구세법의 우대방법과 기간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향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익이 없어서 아직 세수우대정책을 향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우대정책의 기한은 2008년부터 계산한다.

기업소득세의 과도적 세수우대정책을 적용하는 기업은 신 세법과 실시조례의 관련 수익과 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또한 기업소득세 과도적 세수우대정책과 신 세법 및 실시조례가 규정하는 우대정책이 중복되는 경우 기업은 최선의 정책을 선택하여 적용하고 중첩해서 적용해서는 안되며 일단 선택하면 그 후 변경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서부대개발과 관련한 세수우대정책(15%세율과 2면3감)은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국발[2007]39 호)

## 2. 저세율과 기간감면 외의 세수우대정책의 변화

### (1) 재투자에 대한 환급

| 舊세법  | 新세법 |
|--|-----|
| 외상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자가 기업에서 취득한 이익을 동기업의 등록자본을 증가시키는데 직접 재투자하거나, 5년이상 경영할 다른 외상투자기업의 설립 자본금으로 투자하는 경우 재투자한 자금에 해당하는 <u>이미 납부한 기업소득세의 40% 금액 환급</u> 함. | 폐지  |

### (2) 배당소득의 면세

| 舊세법                                  | 新세법  |
|--------------------------------------|--|
| 외국투자자가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이윤은 소득세를 면제함. | 신 세법에서는 <u>거주자기업이 거주자기업에</u> 직접 투자하여 취득한 배당소득만을 면세로 규정함. (조례 제83조) |

- 과거에는 중국 자회사가 한국본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고 한국에서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었음.
- 신세법에서는 거주자기업간의 배당에 대해서만 면세로 규정하므로 한국으로 배당금 송금 시 한 중조세협약의 제한세율인 5%로 원천징수하고 한국본사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3) 국산설비구입에 대한 기업소득세 감면

| 舊세법   | 新세법 |
|---|-----|
| 국산설비를 구입하여 <u>투자한 금액의 40%</u> 를 증가한 소득세액에서 공제하며 미공제된 세액은 5년간 이월해서 공제할 수 있다. | 폐지  |

국산설비 구입에 대한 우대정책은 기업소득세뿐만 아니라 증치세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함께 고려해야 함.

### 3. 신 세법에서 새로 규정하는 우대정책

신 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10개 항목의 우대정책을 새로이 규정하고 있다.

#### (1) 면세수입(법 제26조)

아래 열거한 수입은 면세한다.

- ① 국채이자수입
- ② 조건에 부합하는 거주자 기업간의 배당 등 지분형 투자수입
- ③ 중국 내에 설립된 기구나 장소의 비거주자 기업이 거주자 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그 기구나 장소와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배당 등의 지분형 투자수입
- ④ 조건에 부합하는 비영리조직의 수입

#### (2) 면제 또는 감면소득(법 제27조)

아래 열거한 소득은 기업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한다

##### ①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에 종사하여 발생한 소득

아래 항목에 종사하여 취득한 농업 등의 소득은 기업소득세의 징수를 전액 면제한다.

- 채소, 곡물, 감자류, 식물유 원료, 콩류, 면화, 마류 당료, 과일, 견과류의 재배
- 농작품 신품종의 선육
- 중의약재의 재배
- 임목의 배양과 재배
- 가축, 가금(家禽)의 사육
- 임산물의 채집
- 관개, 농산물의 초급가공, 수의업, 농기술 보급, 농기계 작업과 수리 등 농임목어업 관련 서비스업 항목
- 원양어업

아래의 항목에 종사하여 취득한 농업등의 소득은 기업소득세를 50%감면한다.

- 화훼, 차 및 기타 음료작물과 향료작물의 재배
- 해수양식, 내륙양식

##### ② 국가 중점 육성하는 공공기초시설에 종사하여 발생한 소득

<공공기초설비항목 기업소득세 우대혜택 목록>이 규정한 항구, 공항, 철도, 도로, 전력, 수력 등의 항목에 종사해 취득한 소득은 경영수입을 취득한 첫 번째 해가 과세연도가 되고, 첫해부터 3년째 까지 기업소득세를 면제하며, 4년부터 6년째까지는 기업소득세를 반감 징수한다. (3면3감)

##### ③ 조건에 부합하는 환경보호와 에너지 및 수자원 절약항목에 종사하여 발생한 소득

공공오수 처리, 공공 쓰레기 처리, 메탄가스 종합이용, 에너지절약기술개조, 해수담수화 등 항목에 종사해 취득한 소득은 경영수입소득을 취득한 첫해가 과세연도가 되고, 첫해부터 3년째까지 기업 소득세를 면제하고, 4년부터 6년째까지는 기업소득세를 반감 징수한다. (3면3감)

④ 조건에 부합하는 기술양도소득

거주자기업의 기술 소유권 양도소득이 5백만 위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업소득세 면제하고, 5백만 위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반감 징수한다.

⑤ 본법 제3조3문단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국 내에 기구나 장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비거주자기업이나 설치하였으나 취득한 소득이 그 기구나 장소와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 소득은 10%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한편 비거주자의 아래의 소득은 기업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 외국정부가 중국정부에 대출해 취득한 이자소득
- 국제금융기구가 중국정부와 거주자기업에게 대출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취득한 이자소득
- 국무원이 허가한 기타소득

**(3) 소규모기업 감면(법 제 28 조)**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는 소형기업은 세율을 20%로하여 기업소득세를 감면한다.

- ① 연간 과세표준이 30만 위엔을 넘지 않고, 종업원수가 100명을 넘지 않으며, 자산총액이 3000만 위엔을 넘지 않는 제조기업
- ② 연간 과세표준이 30만 위엔을 넘지 않고, 종업원수가 80명을 넘지 않으며, 자산총액이 1000만위엔을 넘지 않는 기타 기업

**(4) 하이테크기업 감면(법 제28조)**

아래요건에 부합하는 하이테크기업은 세율을 15%로 기업소득세를 감면한다

- ① 제품(서비스)이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하이테크기술영역>규정 범위에 속함
- ② 연구개발비용이 판매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규정보다 낮지 않음
- ③ 하이테크 제품(서비스)수입이 회사 전체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규정보다 낮지 않음
- ④ 과학기술 연구원이 기업전체 직원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규정보다 낮지 않음
- ⑤ 하이테크 기업인정관리방법이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함.

**(5) 민족자치지방 감면(법 제29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민족자치지방의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기업소득세 중 그 지방이 나누어 가지는 부분에 대하여 면제·감면을 결정할 수 있다. 자치주와 자치현은 면제·감면을 결정한 경우 성, 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연구개발비 추가공제(법 제30조)**

신기술·신제품·신공정을 개발하면서 발생한 연구개발비용으로 당기손익에 계상한 것은 실제발생액 외에도 그 발생액의 50%를 추가로 손금산입하며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것은 무형자산원가의 150%를 상각한다.

**(7) 장애인고용에 대한 추가공제(법 제 30 조)**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장애인직원에게 지급된 실제 급여 외에도 장애인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의 100%를 추가로 손금산입 가능하다.

**(8) 창업투자기업 세액공제(법 제 31 조)**

창업투자기업이 주식투자방식으로 비상장 중소하이테크 기업에 2년 이상 투자했을 경우 그 투자액의 70%를 주식을 소유한지 만 2년이 되는 해에 해당 창업투자기업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고, 그 해에 공제되지 않은 것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 가능하다.

**(9) 자원사용소득공제(법 제33조)**

<자원종합이용 기업소득세 우대혜택 목록>에서 규정한 자원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국가가 제한 혹은 금지하지 않은 품목을 생산하여 취득한 수입은 매출액의 90%를 수입총액으로 계상한다.

**(10) 환경보호, 에너지절감 및 안전설비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법 제34조)**

<환경보호전용설비 기업소득세 혜택목록>, <에너지절약 용수절약 전용설비 기업소득세 우대혜택 목록 >과 <안전생산전용설비 기업소득세법 우대혜택 목록>에서 규정하는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안전생산 등 전용설비는 그 설비의 투자액의 10%를 당해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에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이후 5개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으며 5년내에 양도 또는 대여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 V. 특별납세조정

특별납세조정은 우리나라의 부당행위부인규정(국내거래)이나 이전가격과세조정(국제거래)과 유사한 것으로 주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이다. 한국본사와의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공무역기업에게 특히 중요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 1. 특별납세조정의 정의

| 舊세법   | 新세법   |
|---|---|
| <p>기업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독립가격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기업 또는 특수관계자의 과세대상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세무기관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납세 조정할 권한이 있음.<br/>(징관법 제36조, 외상법 제13조)</p> | <p>좌동 (법 제 41 조)</p> <p>기업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기업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u>특수관계거래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u><br/>(법 제 43 조)</p> |

- 기업소득세 신고 시 '특수관계거래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여 특수관계기업과의 거래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무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 특수관계자의 범위

| 舊세법   | 新세법  |
|---|--|
| <p>① 자금, 경영, 상품구입과 판매 등 면에서 직접 혹은 간접적인 통제를 하는 관계<br/>② 제3자에 의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통제되는 관계<br/>③ 기타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관계<br/>(세칙 제 52 조)</p> <p>① 상호간 직간접적으로 지분의 <u>25%이상</u>을 소유<br/>② 제3자가 직간접적으로 쌍방을 소유 또는 의결권 지분의 <u>25%이상</u>을 소유<br/>③ 기업과 다른 기업간에 대차자금이 기업 자기 자본금의 50%이상을 점하거나 기업의 차입 자금 총액의 10%이상을 다른 기업이 보증한 경우<br/>④ 기업의 이사 등 고급관리인원의 반 이상 또</p> | <p>① 자금, 경영, 상품구입과 판매 등 면에서 직접 혹은 간접적인 통제를 하는 관계<br/>② 제3자에 의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통제되는 관계<br/>③ 기타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관계<br/>(조례 제 109 조)</p> |

|  |  |
|--|--|
| <p>는 한명의 상근이사가 다른 기업에서 임명 또는 파견된 경우</p> <p>⑤ 다른 기업에서 특허권리를 제공해야만 기업의 생산경영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경우</p> <p>⑥ 생산경영을 위해 구입한 원자재, 부품 등을 다른 기업이 통제 또는 공급하는 경우</p> <p>⑦ 기업이 생산한 제품 또는 상품의 매출을 다른 기업이 통제하는 경우</p> <p>⑧ 기업의 생산경영에 대해 실제로 통제하는 기타 이익상 관련되는 관계가 있는 경우</p> <p>(국세발[2004]133호)</p> |  |
|--|--|

- 특수관계기업의 정의는 구 세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구체적인 8개의 적용기준은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에 있는 대부분의 외상투자기업은 해외본사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참고로 중국의 이전가격과세를 위한 조사대상선정의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다.
  - ① 생산경영 관리의 결정권이 관련기업의 통제를 받는 기업
  - ② 관련기업간 거래가 비교적 많은 기업
  - ③ 장기적으로 결손일 발생하는 기업(연속 2년 이상)
  - ④ 장기간 미미한 이익 또는 손실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영규모를 확장하는 기업
  - ⑤ 갑자기 영업이익이 증가한 기업(격년으로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한 기업)
  - ⑥ Tax haven에 위치한 관련기업과의 거래가 있는 기업
  - ⑦ 동종산업 또는 동종업종과 비교해 이윤이 낮은 기업
  - ⑧ 그룹내부적으로 비교해 이윤율이 낮은 기업(관련기업과 비교하여 이윤율이 낮은 기업)
  - ⑨ 합리적이지 않은 명목으로 관련기업에 불합리한 비용을 지출한 기업
  - ⑩ 법정면세기간을 이용하거나 그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이윤이 급감해 탈세혐의 있는 기업

### 3. 특별납세조정 방법(정상가격 결정방법)

| 舊세법  | 新세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기업간의 동종 또는 유사한 사업활동에 서의 가격</li> <li>-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 대한 재판매가격으로 연을 이윤수준</li> <li>- 원가에 합리적인 비용과 이윤을 가산한 가격</li> <li>- 기타의 합리적인 방법</li> </ul> <p>(세칙 제54조)</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교가능제3자 가격법</li> <li>- 재판매가격법</li> <li>- 원가가산법</li> <li>- <u>거래순이윤법</u></li> <li>- <u>이익분할법</u></li> <li>- 기타독립거래원칙에 부합하는 방법</li> </ul> <p>(조례 제 111 조)</p> |

- 국제기준을 준용하여 거래순이익률법과 이익분할법을 추가하여 정상가격의 결정방법을 확대함.
- 우리나라는 앞의 세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것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 거래순이익률법이나 이익분할법 등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국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대비는 기업의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상기의 특정기준에 부합한다는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임.

#### 4. 사전합의 제도(APA) 도입

| 舊세법  | 新세법   |
|------|---|
| 규정없음 | 기업은 세무기관에 그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가격결정방법과 계산방법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세무기관은 기업과의 협상 및 확인을 통해 동 <u>가격결정방법에 대하여 사전 합의</u> 할 수 있다. (법 제42조) |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결정에 대한 사전합의제도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향후 많은 외자기업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5. 조세피난처과세제도의 도입

| 舊세법  | 新세법  |
|------|--|
| 규정없음 | 거주자기업이 실질 기업소득세율이 25%보다 현저하게 낮은 국가나 지역에 설립한 기업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u>이윤을 분배하지 않거나 과소 분배하는 경우</u> 그 이윤중에 당해 거주자기업에 귀속되는 부분은 당기소득에 산입하여야 한다. (법 제45조) |

- 조세피난처에 대한 과세제도를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Tax haven지역에 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중국내의 소득을 Tax haven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규제하기 시작함.

#### 6. 가산이자(가산금)의 계산

| 舊세법  | 新세법   |
|--|---|
| 체납일로부터 기산하여 체납액에 대하여 1 일 5/10,000(연 18.25%)에 해당하는 가산금 징수. (징관법 제 33 조) | 가산이자에 특별납세 조정한 세액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이듬해 6월 1일부터 추정한 세금의 징수기간까지일(日)단위 계산하며 이자율은 세금추징 기간과 같은 기간의 <u>중국인민은행이 발표한 인민폐 대출기준이율에 5%를 더해</u> 계산한다. (조례 제121조)<br><br>세법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항에서 규정한 <u>인민폐 대출기준이율로만</u> 이자를 계산한다. (조례 제122조) |

- 구 세법에서는 이전가격과세조정에 대한 가산금 규정이 별도로 없었으며 신 세법에 새로이 규정하였음.
- 현재 중국인민은행이 발표한 인민폐 대출이자율은 기간에 따라 약 5.4%~6.39%이다. 따라서 약 11%의 가산이자를 부담하게 되고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금 이자율(18.25%)보다는 낮음.
- 한편 세무기관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관련자료를 제출하면 가산이자를 절감할 수 있음.

## 7. 납세조정기간

| 舊세법   | 新세법   |
|---|---|
| <p>납세조정은 과세연도부터 3 년이내에 진행되<br/>                     만약 이전연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br/>                     소급하여 조정할 수 있으나 10 년을 초과할 수<br/>                     없다.<br/>                     (징관법 제 56 조)</p> | <p>기업과 그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독립거래원<br/>                     칙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업이 기타 합리적인<br/>                     상업목적은 갖고 있지 않으면 세무기관은 해당<br/>                     업무 발생 과세연도부터 <u>10년내 납세액을 조정</u><br/> <u>할 권한이 있다.</u><br/>                     (조례 제123조)</p> |

이전가격의 납세조정기간을 기본적으로 10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

작성 : 화인경영회계법인 청도대표처 이택곤 회계사(www.icpc.co.kr, 150 6300 4931)